

의안번호	2203257
의 퇴 인	이성권의원
회 답 일	2024.10.17.
추계번호	24D3179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2호 (정의)	외국본인의 대리인(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함)을 외국 본인 등의 통제에 따르거나 자금지원을 받아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함 ¹⁾	—
2	안 제6조 (외국대리인의 등록)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등록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함	의무규정
3	안 제10조 (고시 및 열람)	법무부장관이 등록된 외국대리인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무·재량규정
4	안 제14조(등록취소 및 등록효력 정지)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이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량규정
5	안 제15조(등록취소 청문)	외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의무규정
6	안 제18조(심의위원회) 및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법무부장관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등록취소 또는 등록효력의 정지 등을 심의함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 민간위원(안보, 대외관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재량규정

1)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본인”이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합, 협회, 법인, 기구, 기타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 등을 말한다.
2. “외국본인의 대리인”(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대리인, 대표자, 피고용인, 외국본인으로부터 명령, 요구, 지시나 통제를 받아 행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본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독, 지휘, 통제, 재정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 또는 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외국본인과의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기로 합의 또는 승낙하거나 외국대리인을 자칭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도 포함한다)
3. “외국정부”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자나 그러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상기 단체나 기관의 하위 조직 및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권적 권한 또는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위임받은 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대한민국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 통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4. “외국정당”이란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익이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거나 해당 국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식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는 행위 등을 목표로 삼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전념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5. “등록”이란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본인의 명칭, 대리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2호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외국대 리인의 등록)	
3	안 제10조(고시 및 열람)	
4	안 제14조(등록 취소 및 등록효 력 정지)	
5	안 제15조(등록 취소 청문)	
6	안 제18조(심 의위원회) 및 제19조(위원회 의 구성)	

2. 상세 사유

□ 외국대리인의 등록 등(안 제2조제2호, 제6조, 제10조, 제14조)

-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본인의 성명·소재지 등, 외국대리인의 명칭·국적·소재지 등의 등록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외국대리인과 외국본인의 명칭 등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열람을 허용할 수 있으며, 외국대리인이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국대리인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유지보수비 및 외국대리인 관리 업무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인의 활동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서류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6. “공개”란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등록서류나 회계장부 또는 활동 자료 사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국민에게 열람을 허용하거나 고시하며,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만, 현시점에서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예산 및 유지보수비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의 구축비와 유지보수비는 다음과 같음

[표 1]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소요비용
시스템 구축예산 (2021.6.~2022.1.)	자체발주	개발비	712
		소프트웨어	288
		기술지원비	64
	위임발주	하드웨어	118
		소프트웨어	42
		기술지원	32
		소계	1,256
	유지보수비 (2023년~)	직접인건비	76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40%)		107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37	
소계(부가세 포함)		242	
적정위탁운영비(242백만원)의 47%		112	

자료: 법무부

□ 등록취소 청문(안 제15조)

- 외국대리인이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회의수당이나 회의준비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외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심의위원회(안 제18조 및 제19조)

- 제정안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대리인의 등록, 등록취소 또는 등록효력의 정지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회의준비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등을 현시점에서 예상
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